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3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태선・이기헌・권칠승

정준호 · 김영배 · 김태년

장철민 · 오세희 · 한민수

김준형・박 정・이용우

최기상 · 맹성규 · 이훈기

박균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 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관할"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로, "효율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침에 따라"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
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	거) ①
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	
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u>정할 수 있다</u> .	<u>정하여야 한다</u>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②
자치시장·도지사는 <u>관할</u> 지방	<u>주변 지방자치</u>
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u>효율적</u>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u>등 관할</u>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u>체계적·효율적</u>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	
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3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지침에 따라</u> 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

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u>며,</u>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	
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